

「교사교육연구」 논문집 투고 규정

- I. **【투고자격】** 교육에 관련된 인문사회계, 자연계, 예체능계 분야에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연구자는 누구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- II. **【투고내용】** 교과교육학 중에서 교사교육과 관련되는 논문, 총설, 자료 등을 게재하되 투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- III. **【원고분량】** 학술지 편집양식(아래아한글)을 기준으로 20쪽 이내(참고문헌 포함)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. 이때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100~200단어로 작성한다.
- IV. **【원고작성】**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 언어로 작성되어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한문, 영문,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, 논문의 형식은 본 연구소의 원고작성법에 따른다. 원고의 제출은 전자우편(E-mail: riseter@hanmail.net)으로도 가능하며, 투고 사실을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.
- V. **【게재결정】**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 이 경우 심사내용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VI. **【게재료 및 심사료】**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별채본 대금과 함께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하고, 청탁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.
- VII. **【투고마감 및 발행】** 투고 마감은 매년 1, 4, 7, 10월말로 하고, 발간일은 3월 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1일로 한다.
- VIII. **【저작·전송권】** 본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전송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.
- IX. **【기타】** 교정은 연구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논제와 성명은 한글과 외국어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한다.
- X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